

홍보자료

항상 학교를 염려해 주시고 학교발전과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2020년 9월 15일 개최된 2020학년도 학사일정 변경(안)외 4건의 심의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이 이끄는 지역사회와 함께 우리학교 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협력과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회의결과

의안번호	안건	심의결과	내용																				
1	2020학년도 학사일정 변경(안)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일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방학: 2020.8.3. ~ 8.29. - 겨울방학: 2021.1.18. ~ 1.29. - 종업식: 2021. 2. 5. · 수업일수: 변동 없음 																				
2	용동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7조(출결석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수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대상</th> <th>일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결혼</td> <td>○형제 자매</td> <td>1</td> <td rowspan="5">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td> </tr> <tr> <td rowspan="2">입양</td> <td>○본인</td> <td>20</td> </tr> <tr> <td>○부모 및 조부모(외가 포함)</td> <td>5</td> </tr> <tr> <td rowspan="2">사망</td> <td>○증조부모, 외증조부모</td> <td rowspan="2">3</td> </tr> <tr> <td>○학생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td> </tr> <tr> <td></td> <td>○부모의 형제자매</td> <td>1</td> </tr> </tbody> </table> ⑧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하다. 반일(4시간) 2회 사용시 1일로 환산한다.(신설) <p>제45조(교권보호위원회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용동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용동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교권보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신설) ②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구분	대상	일수	비고	결혼	○형제 자매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양	○본인	20	○부모 및 조부모(외가 포함)	5	사망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학생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1
구분	대상	일수	비고																				
결혼	○형제 자매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양	○본인	20																					
	○부모 및 조부모(외가 포함)	5																					
사망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학생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1																					
3	2020학년도 유치원 학사일정 변경(안)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일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방학: 2020.8.3. ~ 8.29. - 겨울방학: 2021.1.18. ~ 1.29. - 졸업 및 수료식: 2021. 2. 4. · 수업일수: 151일 																				

의안 번호	안 건	심의결과	내 용
4	용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안)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조(수업일수 등) 1. 본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2.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유치원 학비지원계획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미세먼지(나쁨)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원격수업도 운영 방법에 포함한다. ②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③ 질병, 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 (질병 결석 확인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④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30일 범위에서 체험학습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 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한 경조사별 휴가 일수 ⑥ 운영 절차는 보호자가 신청서 및 확인서를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2020학년도 학교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정예산액: 206,986천원 · 경정예산액: 346,943천원 · 증감액: 139,957천원

2020. 9. 16.

용 동 초 등 학 교 장